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4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4일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19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u>1년</u> 이내 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3년</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안이유에서 비교한 공무원의 경우는 고용주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 기업규모, 재정여력, 조직문화 등이 각기 다른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와 직접적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할 경우 영세 사업장에는 인력공백, 인건비 등 인력 운용상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제도 활용이 재정여력이 있는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임.

아울러, 휴직기간이 길어질 경우 여성 근로자에 돌봄부담이 집중되고,¹⁾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연장은 여성 경력단절 및 돌봄부담 심화,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및 중소기업 부담, 유급화시 채용 조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1) '23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72%가 여성임